

#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

의안 번호	210
----------	-----

제출년월일 : 2001. 4. 3.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우리군의 특성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평창군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자연경관 보존의 기본원칙

-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 산림·하천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의 자제유도, 자연생태계의 보존
- 도로 및 철도 건설시 경관보존을 위한 노력(단절식→터널식)
- 역사·문화유적지 주변의 난개발 자제

### ○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 산림·하천·호수·역사·문화유적지 주변,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보존 및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경관형성계획 수립
- 계획의 개요 및 경관형성의 기본구상
- 자연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 ○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및 경관심의위원회

- 기본계획을 수립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 고시(단,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건축물의 신축·대수선,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재식 또는 벌채, 대지조성, 주택건설등 행위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따라 권고·조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 라.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평창군경관형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인간의 시지각적(視知覺的) 인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간구성에 대하여 대상군(對象群)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적 현상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건축, 구조물, 역사, 문화적 공간 등 인문 경관과의 조화와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경관형성”이라 함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4. “경관형성계획”이라 함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형성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경관형성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하“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주민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실천을 도모하며,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이 경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스스로 또는 지역 주민과 협조하여 경관형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군이 실시하는 경관 형성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관리
2.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계·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②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자연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 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제7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개요
2. 경관형성의 기본구상
3. 부문별 경관형성 계획
4.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5. 경관형성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

## 6. 자연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 7.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②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창군경관형성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형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와 기준, 지침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계획을 참고하여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형성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경관형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

마. 녹지 자연도가 높은 산림의 보전

####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계 기능을 최대한 고려

###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 공간으로 정비

다. 방제 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 4. 도로 및 철도

가. 도로 및 철도 건설시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

나. 수목·기암괴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마. 도로시설물 및 교량설치시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택하고 주위에 있는 경관자원을 가능한 한 살리도록 고려

### 5. 역사·문화유적지 주변

가. 역사유적지 주변의 인공시설물의 높이, 규모, 형태, 재질 등에 있어서 해당 역사유적지와의 조화를 고려

나. 옥외광고물의 규모, 형태, 색채, 야간조명 등에 대하여는 역사유적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

### 6.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 고려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및 시설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유지

라. 송전·통신탑의 설치는 경관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피하고 배치시에는 색채 디자인 등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가급적 수목을 이용 은폐·엄폐될 수 있도록 고려

-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평창군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관형성 활동 및 단체 등) ①군수는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군수는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경관형성심의위원회) ①군수는 경관형성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경관형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형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군수는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5급이상의 평창군 소속 관계공무원과 환경, 건축, 도시계획, 경관, 조경, 조형, 문화재, 문화예술, 미술, 교통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1조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받은 사업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 및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사업
3. 평창군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13조(경관형성을 위한 권고·조언 등)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형성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의 재식 또는 벌채
4.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실시
5. 옥외광고물의 설치
6. 기타 경관형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또는 위원회 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 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경관보전지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령 발췌

## ○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1.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 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생태계 및 수려한 자연경관등은 보전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법 위 목적과 제3조의 규전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관리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의 진흥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을 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별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입목의 별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법 제4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기타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 세기 신 사고 활기찬 평창”

평·창·군

우 232-800 / 강원 평창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3)330-2492 / FAX 330-2595

건설과(본청1층) 과장:박현창 건설행정담당:김남국 실무자:김남호(knh1583@hanmail.net)

문서번호 건설 58201 - 610

시행일자 2001. 3. 22 (년)

받음 내부결재

참조

보존기간	5년	군 수
공개여부	공 개	102,228
부군수		
과장	전 결	
기안자	김 남 국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건설 58201-341(2001. 2. 19)호의 관련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01. 2. 19~3. 10(20일간)
2.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읍면게시판
3. 공고내용 :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제정안
4. 공고결과 : 의견없음

붙임 : 읍·면 공고결과 1부. 끝.

평·창·군·수